

#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2-44호

## 제 2장 냉방설비의 설치기준

### 제 4조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업무시설, 판매시설 또는 연구소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숙박시설, 기숙사, 유스호스텔 또는 병원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일반 목욕장, 특수목욕장 또는 실내 수영장
4.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 설비 또는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제 5조 (냉방설비의 축열율)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냉식 전기냉방으로 설치할 때에는 전체 축냉방식 또는 축열율이 40%이상인 부분축냉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질의서를 (주)정림건축에서 97년 1월 14일 통상산업부 장관실 건축법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10

일 자 : 1997. 1. 14

수 신 : 건설교통부 장관

발 행 : 건설법규 담당

제 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설부령 제506호) 중 제23조②항의 규정을 대한

질의

1. 풍상산업부 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92-44호 92년7월25일 : 제4조에서 중앙집중냉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정을 참고하여 일반 블록어프로 개별냉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광 숙박시설 '문도미니언'의 연면적이 16,000㎡인 경우 개별 블록어프로 냉방설 비가 가능한지 여부. 같.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 -11

임호빌딩 4층 김 명 호

과 관	계 호 (내외)	처리
1997 1 16	631	서기판용 기준 R

*Handwritten signature*

# 통 상 산 업 부

우427-77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 전화02-500-2751 / 전송503-9603 / 담당 김덕호

문서번호 전력 57300 ->7

시행일사 97. 1.28.

수신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5-11

참조 인호빌딩 4층 (주)정림건축

김명호 귀하

제목 결의회신

1. 귀하께서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부에 이첩되어 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술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우리부에서 제정고시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통상산업부 고시 제92-44호, '92.7.30 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율 중앙집중냉방설비로 설치할 경우 적용하고 있으며, 개별냉방방식에 대하여는 동 고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통 상 산 업 부 장 관

# 제목: 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 규모에 관한 질의

작성일자	접수일자	현황	회신일자	담당부서
2001-08-28	2001-08-28	회신완료	2001-08-31	자원기술과

1. 귀 부처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의 냉난방설비 설치 기준에 관련하여 당사의 package type의 공기조화기 채택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선처바랍니다.

- 아 래 -

1. 건축물의 냉난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관한 법4조 각 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당사의 완전공기조화기를 설치하여 각층별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각층별 개별적으로 R-22를 사용한 COMP와 Package type 완전 공기조화기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실시하고자 함).
2. 냉난방시설이라 함은 냉동기나 보일러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냉방설비의 경우 터보냉동기를 사용했을 경우 전력량이 크므로 빙축열이나 흡수식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맞는지의 여부.
3.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할 때에는 적용받지 않는지의 여부

※ 질의사례 :

(주) 정림건축에서 질의한 개별적인 냉난방설비의 설계 적용에 관련하여 귀 부처의 질의회신

(문서번호:전력57300-33)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끝.

13

# 질 의 서 에 대 한 회 신

담당부서	이름	E-MAIL	전화번호
자원기술과	김정한	hl2ilh@mocie.go.kr	500-2753

- 1 "건축물의 설비기술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업자원부가 제정 고시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은 여름철 15시경에 집중되는 냉방용 최대전력수요를 축냉식 냉방 또는 가스식 냉방으로 대체시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발전소 건설 투자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2.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냉방설비를 중앙 집중식 냉방설비로 설치할 경우에는 적용되나, 다만 개별 냉방방식으로 냉방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14